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11. 26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11.19. 오 진 아 의원 외 13명
- 나. 회부일자 : 2013.11.20.
- 다. 상정일자 :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13.11.26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오 진 아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, 소위원회 및 의결사항의 처리, 의견청취, 공청회 등의 개최 등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(안 제2조)
- 2) 위촉대상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을 추가(안 제3조)

- 3) 위원의 해촉사유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를 추가(안 제5조)
- 4)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명시(안 제7조)
- 5) 소위원회 및 의결사항의 처리, 의견청취, 공청회 등의 개최 등 관련 규정 신설(안 제8조 ~ 제11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2013.11.19 오진아 의원이 대표발의(발의자 14명)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0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,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 위원회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음.

또한 위원회 위원 위촉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음.

0 본 조례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장기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조례개정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 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최근의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0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의원 발의 개정안과 관련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마포구청장 의견을 조회한 결과, “조례 개정안에 동의함”으로 의견 회신한바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